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775
----------	-------

발의연월일 : 2025. 9. 8.

발 의 자 : 김소희 · 김도읍 · 김민전
장동혁 · 유용원 · 김승수
강승규 · 김상훈 · 우재준
조경태 · 김미애 · 조지연
박충권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상 재해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함.

그런데 사고로 인한 공무원상 부상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특정하기 용이한 반면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무원상 질병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특정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음. 이로 인하여 공무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질병에 걸린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등, 공무원이 공무원상 질병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원상 질병의 경우에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최초 진단일로 법률에 명시하여, 공무원과 유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

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법률 제 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발생한 날”을 “발생한 날(공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최초 진단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급여의 사 유가 <u>발생한 날</u> 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 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이하 “기준소득월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용에 관련한 법률 또는 국회 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 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직 급 또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 위를 포함한다)에 승진 등 임 용된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 지의 급여의 산정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에 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 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제1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 ----- ----- <u>발생한 날(공무상 질병의</u> <u>경우에는 최초 진단일을 말한</u> <u>다. 이하 같다)</u> ----- ----- -----. ----- ----- ----- ----- ----- ----- ----- -----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